

2022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

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 요건

- (기존)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에 따라 피보험자격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경우 지원(~ 21.12.31.)
- (변경) 당해 사업장 입사(고용보험 가입) 후 90일이 경과한 대상자만 지원 가능

* '22.1.1.이후 기간의 고용유지조치 →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지난 대상자 지원

■ 자치단체 추가지원 관련

- (기존)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사업장에 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차감 없이 지원
- (변경)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'22.6.30.이 포함된 경우까지 자치단체 추가 지원 허용 - 종료 시기 지정(~'22.6.30.)

■ 매출액 등 비교 시점 변경(한시 연장)

- (기존)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사업주 인정 시 매출액 등의 비교시점을 직전 연도에서 2019년으로 변경(~'22.1.31.<유급>, ~22.6.30.<무급>)

◆ 매출액 비교 시점 예시

(유급) '23.1.1.~1.31.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한 경우(기준달: '22.12월) ⇒ '22.12월 매출액과 '19.12월 매출액 비교

(무급) '23.1.1.~1.31.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'22.11.30.에 제출한 경우(기준달: '22.10월) ⇒ '22.10월 매출액과 '19.10월 매출액 비교

- (조정) '20~'21년은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매출액 등 비교 시점 변경 연장(~'23.1.31.)

*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'23.1.31.이 포함된 계획신고서까지 2019년으로 변경 적용

■ 3년 이상 연속 같은 달 지원

- (기존)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
- (조정) 계속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라 검토
 - ① (중소기업)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
 - ② (대규모기업) 매출액, 영업이익 등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불가피성 여부 판단